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의원입니다.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1인가구 증가,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서울 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놀이터에 대한 주민 수요도 증대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동물놀이터 면적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1조제2항에 따라 '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'과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(조례 제3조에 따른 생태공원, 놀이공원, 가로공원)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.
  - 상위법령인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및 시행규칙에서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과 문화공원, 체육공원 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놀이터 면적 기준을 도보권 근린공원 수준인 '3만 제곱미터 이상'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, 체육공원 내 설치 등을 규정하여 대규모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환경을 조성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